

정조의 무늬 있는 비단 금지령 『금문사목』 연구

Research on *Geummun-Samok*(禁紋事目, a regulations banning the import of patterned silk) in 1787

이윤석*

국문요약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금문사목(禁紋事目)』의 정확한 번역이다. 이제까지 『금문사목』의 번역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내용 전체의 정확한 번역은 없었다. 영조와 정조 시대의 여러 문헌에 『금문사목』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들어 있어서, 이를 참고하면 대략의 내용을 알 수는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번역에 잘못된 곳도 있고, 핵심적인 내용인 금지규정은 번역된 바가 없다. 이 글의 제2장에서 번역한 내용은 앞으로 『금문사목』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금문사목』을 하나의 연구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RISS에서 ‘금문사목’을 검색해보면, 석사학위논문 한 편이 나올 뿐이다. 이 논문도 『금문사목』을 다룬 부분은 아주 짧으므로, 『금문사목』을 주제로 다룬 것은 아니다. 영조와 정조 시대에 일반 국민들이 무늬 있는 비단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학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선시대 일상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문사목’은 조선후기를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셋째, 『금문사목』은 영조의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고, 정조는 이 정책이 이후에도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가면, 문단(紋緞)을 금지하는 규정은 유명무실해진다. 비단과 관련된 노래나 소설 속에 나오는 비단 관련 내용을 보면, 정조 때 제정한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어 금문사목(禁紋事目), 문단(紋緞), 무늬 있는 비단, 비단의 수입, 비단타령, 영조, 정조,

- 차례**
1. 서언
 2. 『금문사목』 원문 및 번역
 3. 『금문사목』 간행 경위
 4. 문단(紋緞) 금지령 관련 옥사(獄事)
 5. 19세기 통속예술 속의 비단
 6. 결론

1. 서언

정조 11년(1787) 10월에 간행되어 배포된 『금문사목(禁紋事目)』은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왕의 명령을 실어놓은 책자이다. 정조가 이 명령을 내린 이유는, 영조 22년(1746)에 무늬 있는 비단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명령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문사목』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부분은 영조와 정조의 수교(受敎)를 실어놓은 것이고, 둘째 부분은 당시 형조판서 윤시동(尹蓺東)이 두 임금의 수교를 받들어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규정의 자세한 조목을 실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에 가는 사신이 가져가거나 가져올 수 없는 물건의 구체적인 항목과 함께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에 관한 내용을 적어놓은 〈사행재거사목(使行賫去事目)〉을 덧붙였다.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무늬 있는 비단을 지칭하는 ‘문단(紋緞)’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 문단을 제조하는 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소비하는 문단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무늬 있는 비단의 양이 많아지면서, 조선 조정에서는 비단 수입으로 국부(國富)가 유출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문단의 수입을 금지하는 영조의 명령이 처음 나온 시기는 영조 22년 4월로, 영조대왕 행장에 이때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가 있다. 또 영조 22년 4월 16일 실록의 기사에, “비단에 기이하고 교묘한 무늬를 놓는 것을 금하라고 명하였다(命禁紗緞紬之有奇巧紋者)”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날 구체적인 명령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조의 문단 금지 수교는, 정조 11년 9월 29일에 나왔다. 정조는 영조의 수교와 자신의 전교(傳敎)를 책자로 만들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 10월 초에 『금문사목』을 간행하여 배포하게 된다.

『금문사목』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17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이 청나라에서 생사(生絲)와 비단을 들여와서 이를 일본에서 되파는 무역을 다루는 연구에서 가볍게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석사학위 논문에서 『금문사목』을 다룬 것이 있는 정도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먼저 『금문사목』의 원문과 번역을 제시할 것인데, 이제까지 『금문사목』 전체를 번역해놓은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금문사목』이 나오게 된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고, 문단(紋緞)을 수입하다 적발된 사람을 처벌한 두 건의 사례를 통해, 무늬 있는 비단의 사용을 금지한 법령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19세

기 문학작품 속에 비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검토해서,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정책이 19세기에는 유무실했음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2. 『금문사목』 원문 및 번역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금문사목』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아래에서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원문과 번역을 싣고, 필요한 부분에 주석을 붙이기로 한다.

2.1. 영조와 정조의 수교(受敎)

영조의 수교는 ‘선조수교(先朝受敎)’라는 명칭으로, 정조의 수교는 ‘당녕수교(當寧受敎)’라는 이름으로 실어놓았다.

「先朝受敎」

二十二年丙寅 禁燕貿紋緞 敎曰, “土地之生財有限 軍國之需用甚繁, 一使之行費礦銀十萬 以充王公卿大夫匹庶所需之綾羅. 窮村僻野 爭尚以侈, 竭一國之財 助一時之侈, 可勝歎哉. 噫! 上有好者 下必甚焉. 始自今年節使 衮衣·輦輿·翟衣·朝臣命婦章服·軍門旗幟之外, 凡有奇巧之紋者 一切嚴禁. 如有犯者, 書狀施以不職之律, 市民直施一律, 譯官商賈 自灣府 先斬後啓, 貨物焚之柵外. 著爲令式.”

「當寧受敎」

十一年丁未 申禁紋緞 敎曰, “禁紋一事 丙寅年受敎, 法令不啻至嚴 昭載金石, 十數年來 稍稍解弛. 予於聽政初 綸音微及於時弊條, 而挽近尤復蕩然. 雖以今日入侍諸臣言聞之 益聞其所不聞. 婦女之婚具 燕服用紋品 看作尋常. 此說既發於筵席 則決不可 但令關飭使行而止. 昧爽以前 雖不溯究用律 及今申禁烏可已乎. 自今年使行 一依丙寅年受敎 申禁且按受敎章服軍門旗幟外 凡有奇巧之紋 一切嚴禁 載錄戎着最無一定之式 今於申禁之時 須有別般剖析條件 可無眩於舉行. 伊時有

成節目之命 而只以傳教行會 無事目之見存於廟堂者云 令廟堂謹將先朝受教 及此傳教尾付合行條件揭板灣府及譯院 仍令印出冊子 分置本司 及諸法司 以爲永久遵行之地 此蓋仰述先朝昭儉省費之盛意也 爲今日廷臣者 當寧受教 宜不敢放忽看過 況遵先朝受教 更申於今日者乎 予則曰 宮中之至今遵守 觀於大小服着可以知耳 諸臣則先從家內婦女 各自痛禁則 閭巷自當有觀感之效 象譯輩亦豈必售無利之利 甘犯邦憲乎 此實爲端本之政 並以此意嚴飭.”

「선조수교」

영조 22년 병인(1746)에 연경에서 문단(紋緞) 사 오는 것을 금하며 다음과 같이 하교하였다.

“토지에서 나는 재화는 한이 있고, 군국(軍國)의 씬씀이는 매우 다양하다. 한번 사신이 가는 데 광은(礦銀)¹ 10만을 써서 왕공(王公), 경대부(卿大夫), 필서(匹庶)가 쓰는 능라(綾羅)를 충당한다. 궁벽한 시골에서도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여, 한 나라의 재화를 다 써서 한때의 사치를 돕고 있으니, 가히 탄식할 일이다. 아! 위에서 좋아하는 것은 아래서는 반드시 더욱 좋아하니, 올해 사절부터 시작하여, 곤의(袞衣), 연여(輦輿), 적의(翟衣), 조신(朝臣)과 명부(命婦)의 장복(章服), 군대의 깃발 이외에는 기교(奇巧)한 무늬가 있는 것은 모두 엄금한다.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서장관은 직분을 다하지 못한 법률로써 다스리고, 시전(市廛)의 상인은 사형에 처하며, 역관(譯官)과 상고(商賈)는 의주에서 선참후계하고, 사 온 물건은 책문 밖에서 태우는 것을 분명하게 영식(令式)으로 삼는다.”

「당저수교」

11년 정미(1787)에 다시 문단(紋緞)을 금지하는 전교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문단을 금하는 일은 병인년 수교로, 법령이 지극히 엄할 뿐만 아니라, 문서에 환하게 기록해놓았는데, 십 수 년 이래로 점점 해이해졌다. 내가 대리청정하던 초기에 윤음(綸音)에서 시폐(時弊)의 조목에 대해 조금 언급했는데, 근래에 다시 더욱

없어졌다. 그런데 금일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의 말을 들으니, 더욱이 듣지 못했던 바를 듣게 되었다. 부녀의 혼구(婚具)와 잔치에 입는 옷에 무늬 있는 물품을 쓰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이 말이 이미 연석(筵席)에서 나왔으니, 단지 문서로 타일러서 사행 때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불가하다. 비록 오늘 새벽 이전까지는 소급해서 법률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다시 금하는 것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금년 사행(使行)부터 병인년 수교(受教)에 의거하여 다시 금지하는 이 수교를 살펴, 장복(章服)과 군대의 깃발 이외에는 기묘하고 교묘한 무늬가 있는 것들을 모두 엄금한다. 군복에 관해서는 일정한 규정을 정해놓은 것이 없는데, 지금 다시 금지하는 때에 모름지기 별도로 조항을 나누어, 거행하는 데 헛갈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번 절목(節目)을 만들라는 명령이 있었을 때, 단지 명령을 전하는 공문만 보내어, 묘당(廟堂)에 사목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묘당으로 하여금 삼가 선조(先朝)의 수교와 이 전교(傳教)의 뒤에 합당한 조항을 덧붙여 서, 만부(灣府) 및 사역원(司譯院)에 걸어놓도록 하라. 그리고 책자로 인출(印出)해서 본사(本司) 및 여러 법사(法司)에 나누어 보관하도록 하여 영구히 준행할 수 있도록 하라.

이는 선조께서 검소함을 밝히고 비용을 줄이겠다는 성대한 뜻을 우리러 이어받은 것이다. 오늘날 조정의 신하 된 자는 나의 수교(受教)를 감히 소홀히 보아 넘겨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선조(先朝)의 수교(受教)에 따라 오늘 다시 펴는 데 있어 서라. 지금까지 궁중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는 여러 가지 옷을 봄으로써 알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 신하가 먼저 집안의 부녀자들부터 각자 통렬히 금지한다면, 여항(閭巷)에서 저절로 보고 느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역관들 또한 어찌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을 팔아 쉽게 나라의 법을 어기려 하겠는가? 이것은 실로 근본을 바르게 하는 정사이니, 이러한 뜻으로 엄히 타일러 조심하도록 하라.”

1 광은(礦銀)은 조선의 은광에서 캐낸 은을 말한다.

2.2. 문단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목

정조의 명령을 받은 형조판서 윤시동(尹蓍東)은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규정의 구체적인 조목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禁紋一事 卽我先大王昭儉祛侈之盛德大業也. 斷自宸衷永貽燕謨. 雖在貴近綺紈之家 莫或違越. 而第緣歲月寢久 謬習潛滋. 有紋錦緞之屬 縱不敢顯着. 別紋羅紬之類 便視以常用. 婦女何知轉相效 尤此而不禁 幾何不蕩然也. 今我聖上監于成憲 特命申禁. 始自今年使行 敬遵先朝受教 及今下傳教 申命禁制爲白乎矣. 合行²事件著爲事目條列于左爲白齊.

一, 袞衣[雲紋]·帖裏[龍紋]·翟衣[金縷或鄉織]·輦輿[雲紋]所用緞品 依前舉行爲白齊

一, 命婦章服 依前用鄉織爲白齊.

一, 朝臣章服戎服 並用雲紋爲白齊.

一, 將臣以下軍服 本無定制 毋論緞紗 雜用諸紋 故各樣紋品 藉此出來. 此後段 雲紋及賞賜緞紗大樸紋外 諸般紋品 毋得取用爲白齊.

一, 紋緞禁令之後 如注雨紗·杭羅·改只紬·小綾之有紋者 取以爲婚具宴服 侈靡之習 反有甚於用紋緞之時. 今此申禁之命 槩爲是耳 此等名色 一切嚴禁爲白齊.

一, 使行往還時 搜檢之法 近漸解弛. 當此申明禁紋之時 宜有別般嚴飭之道. 着念舉行 毋陷重罪爲白齊.

一, 今此諸條使行賁去事目 一體添入爲白齊.

一, 依下教 灣府及譯院揭板 備邊司·司憲府·刑曹·漢城府印置冊子 伍部及八道·兩都段 膽關知委俾無不知冒犯之弊 爲白齊.

一, 未盡條件 追于磨鍊爲白齊.

資憲大夫刑曹判書 兼經筵成均館事 臣 尹蓍東 奉教謹書
乾隆伍十二年十月 日

문단(紋緞)을 금하는 일은 우리 선대왕(先大王)께서 검소함

을 빚내고 사치를 제거하신 성대한 덕업이다. 성상께서 결단을 내리시어 후손을 위한 계책을 영원히 남기셨으니, 비록 부귀하고 지체 높은 집안이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고 잘못된 습속이 점점 늘어나면, 비록 문단을 감히 입지 못하더라도, 다른 무늬 있는 나주(羅紬) 따위는 쉽게 볼 수 있어서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부녀자들이 이를 서로 흉내 내는 것을 금하지 않게 되면, 이 비단을 금하는 일이 어찌 모두 사라지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성상께서 성헌(成憲)을 거울삼아 특별히 다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올해의 사행부터 선조의 수교 및 지금 내린 전교를 잘 받들어 따르라. 다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셨으니, 이에 그 내용을 조목 별로 써서 아래에 나열한다.

1. 임금의 예복[구름무늬], 무관의 공복[용무늬], 왕후의 예복[금선(金縷)³ 혹은 향직(鄉織)], 왕실의 가마[구름무늬]에 쓰는 비단은 전에 쓰던 대로 한다.

2. 명부(命婦)의 장복(章服)은 전에 쓰던 대로 향직(鄉織)을 쓴다.

3. 조신(朝臣)의 장복(章服)과 용복(戎服)은 모두 구름무늬를 쓰도록 한다.

4. 장신(將臣) 이하의 군복은 본래 정한 제도가 없어서, 단(緞)과 사(紗)를 막론하고 여러 무늬를 혼합하여 썼으므로,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무늬가 나왔다. 차후에는 구름무늬 및 중국에서 내려주는 단(緞)과 사(紗)의 대접무늬⁴ 이외의 다른 무늬가 있는 물건은 쓰지 못한다.

5. 문단(紋緞) 금지령 이후에, 주우사(注雨紗)·향라(杭羅)·개지주(改只紬)·소릉(小綾)⁵의 무늬 있는 것을 혼구(婚具)와 연

3 금선(金縷)은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대접문(大樸紋)의 대접(大樸)을 그릇의 하나인 대접으로 보아 '대접무늬'라고 번역했다.

5 주우사·향라·개지주·소릉 등은 비단을 짜는 방법에 따른 명칭이다. 주우사(注雨紗)는 주름이 지게 짠 것이고, 향라는 성글게 짠 것이며, 개지주는 '깨끼비단'이란 말로 얇은 비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릉은 미상이다. 조선시대 수입 비단 연구에서는 개지주나 소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놓지 못하고 있다. 이은진, 「19~20세기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이다란·김여경, 「19세기 무역 발기[件記]를 통해 본 왕실용 문직물 수입과 문양 선호 경향」, 『服飾』 73-5, 한국복식학회, 2023.

2 '合行'은 '이에', '마땅하다' 등으로 해석하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하다.

복(宴服)에 써서 사치하는 풍조가 문단(紋緞)을 쓰던 때보다 더 심하다. 이제 이 다시 금지하는 명령은 대개 이 때문이니, 이런 것들은 모두 엄금한다.

6. 사행(使行)이 가고 오는 때에 수검(搜檢)의 법이 근래 점차 해이해졌는데, 이번에 다시 무늬 있는 비단을 명백히 금지하는 때를 당하여, 마땅히 별도의 엄칙(嚴飭)하는 방도가 있어야 한다. 마음에 잘 새겨두고 거행하여, 무거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7. 이제 여기에 사행재거사목(使行賣去事目)에 관한 항목 일체를 보태어 넣는다.

8. 하교에 따라, 의주와 사역원에 써서 걸어놓고, 비변사·사헌부·형조·한성부에 책자를 인출하여 비치하고, 오부(伍部) 및 팔도(八道)와 양도(兩都)는 관문(關文)으로 써서 알려주어, 몰라서 죄를 범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9.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

자헌대부 형조판서 겸 경연 성균관사 윤시동(尹耆東)은 교(敎)를 받들어 삼가 썼음.

건륭(乾隆) 52년 10월 일

2.3. 부록 「사행재거사목(使行賣去事目)」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규정인 ‘금문사목’은 위의 두 부분으로 끝나지만, 여기에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정을 덧붙여서 책자로 만들었다. ‘사행재거사목’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행이 가지고 가는 사목’인데, 이 사목에는 사행과 관련된 이전의 각종 법령집과 구두로 내려진 명령 등이 모두 실려 있다. ‘사행재거사목’을 만들면서 참고한 기존의 자료는, 『대전통편(大典通編)』, 『속대전(續大典)』, 『통문관지(通文館志)』, 『대청회전(大清會典)』 등의 법령집과 예조(禮曹)의 사목이 있고, 이 외에 영조와 정조의 수교나 그때그때 나온 금지 조항도 있다.

「使行賣去事目」附

一, 凡本朝應諱之事 不得漏洩爲白乎矣. 如有犯者 杖一百

徒三年, 關係重者 用一律爲白齊.[『大典通編』, 『續典』]

一, 賣定數外物貨者 杖一百, 挾帶雜文書及我國書冊者 杖一百流三千里爲白齊.[『大典通編』原典及禮曹原事目. 原事目 則年條未詳. 我國書冊 壬寅禁條.]

一, 公文外 潛賣禁物者[闊細布·絲文席·厚紙·貂皮·土豹皮·海獺皮·水獺皮之類] 杖一百徒三年, 重者[金·鐵·牛馬·珠玉·寶石·焰硝·軍器之類] 用一律爲白齊.[『大典通編』原典, 水獺皮壬寅禁條.]

一, 騾馬·樺皮私買 依前禁斷爲白齊.[『通文館志』, 課馬 丙子以後約條, 樺皮 順治庚寅禁條.]

一, 玄黃紫皂大花·西蕃蓮緞·器皿·牛角·硫黃·馬匹等物, 私自買來者 杖一百流三千里爲白齊.[『大清會典』]

一, 挾持蓼貨者 用一律爲白齊.[『大典通編』, 『續典』.]

一, 八包定數外 銀貨賣去者 用一律爲白乎矣, 搜檢前現發者 極邊定配爲白齊.[『大典通編』, 『續典』.]

一, 禁紋一款 依受教定制爲白乎矣, 袞衣[雲紋] 帖裏[龍紋] 翟衣[金縷] 輦輿[雲紋] 所用緞品 依前舉行. 朝臣章服 并用雲紋, 將臣以下軍服用雲紋及賞賜緞紗大標紋, 此外緞紗之各樣紋品及 注雨紗 杭羅 改只紬 小綾之有紋者 一切嚴禁. 律名段依『大典通編』施行爲白齊.[丙寅受教·丁未受教.]

一, 使行渡江後 約束一行中軍官書記, 凡係物貨交易 盤纏與受外 毋得親昵往來, 筆談唱和 書札問訊 土產贈遺等節 另加禁斷. 如有犯者, 書狀官還渡江後 以冒禁律狀聞論勘. 書札贈遺時, 居間象譯, 搜檢時亦爲摘發, 繩以重律. 正使所屬有犯者 罪正使, 副使所屬有犯者 罪副使, 而書狀官係是兼臺檢察一行毋論上副所屬 所犯蒙不覺察, 從他現發 則一體論責. 書狀官所屬有犯科 加等勘罪爲白乎矣. 苟或有關係使行 不得不臨時周旋者 三使臣相議善處, 還朝後條陳事情爲白齊.

一, 凡係書籍之涉於左道 不經異端妖誕之 及雜術方書, 一切嚴防爲白乎矣. 毋論譯官及三使臣所屬 如有潛買之事, 卽其地摘發 燒火狀聞. 犯者置之重辟 使臣嚴繩, 書狀官卽其地方灣府定配爲白齊.[已上兩條 丙吾定式 丁未定式.]

一, 書狀官 分司憲府稱號爲白齊.[原事目.]

一, 使臣往還時搜檢之法 近漸解弛, 事之寒心 莫此爲甚. 右

項禁物如有潛買出來 從後現發之事, 則當該義州府尹 申明舊典 從重論勘爲白齊.

一, 未盡條件 追于磨鍊爲白齊.

乾隆伍十二年十月 日

부록 「사행재거사목(使行賣去事目)」

1. 대저 우리나라에서 마땅히 숨겨야 할 일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장(杖) 100대에 도(徒) 3년에 처하며, 관계가 중대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대전통편(大典通編)』과 『속대전(續大典)』에 실려 있다.]

2. 정해진 수량보다 많은 물건을 가져가는 자는 장 100대이다. 여러 가지 문서나 우리나라의 서책을 가지고 가는 자는 장 100대에 유(流) 3000리에 처한다. 『대전통편』의 원전과 예조(禮曹)의 원래 사목(事目)에 실려 있다. 원래의 사목은 그 연대를 알 수 없다. 우리나라의 서책에 관한 조목은 임인년(1872)의 금조(禁條)에 실려 있다.]

3. 공식 문서로 정한 것 이외의 금지된 물품[활세포(闊細布), 채문석(綵紋席), 후지(厚紙), 초피(貂皮), 토표피(土豹皮), 해달피(海獺皮), 수달피(水獺皮) 따위이다.]을 몰래 파는 자는 장 100대에 도(徒) 3년에 처한다. 중요한 물품[금(金), 철(鐵), 우마(牛馬), 주옥(珠玉), 보석(寶石), 염초(焰硝), 군기(軍器) 따위이다.]을 몰래 판 자는 사형에 처한다. 『대전통편』의 원전에 실려 있다. 수달피는 임인년의 금조에 실려 있다.]

4. 암컷 말과 뱀나무 껍질을 사사로이 파는 것은 전례에 따라 금단한다. 『통문관지(通文館志)』에 실려 있다. 암컷 말은 병자년 이후 약조(約條)에 실려 있고, 뱀나무 껍질은 순치(順治) 경인년(1650)의 금조에 실려 있다.]

5. 현색(玄色), 황색(黃色), 자색(紫色), 조색(皁色)의 대화(大花)와 서번(西蕃)의 연단(連緞), 그리고 기명(器皿), 우각(牛角), 유황(硫黃), 마필(馬匹) 등의 물건을 사사로이 사 오는 자는 장 100대에 유(流) 3000리에 처한다. 『대청회전(大清會典)』에 실려 있다.]

6. 삼화(蓼花)를 몰래 가져가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대전

통편』과 『속대전』에 실려 있다.]

7. 팔포(八包)에 정해진 숫자보다 은화(銀貨)를 더 가져가는 자는 사형에 처하되, 수색하기 전에 드러난 자는 먼 변방에 귀양 보낸다. 『대전통편』과 『속대전』에 실려 있다.]

8.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이 규정은 수교(受敎)에 따라 제도를 정하되, 곤의(袞衣, 구름무늬), 철릭[용무늬], 적의[翟衣, 금빛 비단], 연여[輦輿, 구름무늬]에 쓰는 비단은 이전과 같이 그대로 쓴다. 조신(朝臣)의 장복(章服)에는 구름무늬를 쓰고, 장신(將臣) 이하의 군복(軍服)에는 구름무늬와 중국에서 하사한 비단의 대접무늬를 쓴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 비단 및 주우사(注雨紗), 항라(杭羅), 지주(只紬), 소릉(小綾) 등에 무늬가 있는 것은 모두 엄금한다. 율명(律名)은 『대전통편』에 따라 시행한다. [병인년 수교와 정미년 수교에 실려 있다.]

9. 사행(使行)이 압록강을 건넌 뒤에는 일행 중의 군관(軍官)과 서기(書記)를 단속하여, 모든 물화의 교역(交易)과 여비를 주고받는 것과 관련된 일 이외에는, 친근하게 왕래하거나 필담(筆談)을 주고받는 일, 그리고 편지로 안부를 묻거나 토산물을 보내는 등의 일은 특별히 금단한다.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귀국 후에 서장관을 금률(禁律)을 어긴 것으로 장계(狀啓)를 올려 보고하여 죄상(罪狀)을 논하여 다스린다. 서찰을 보낼 때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역관(譯官)은 수검할 때에 또한 적발하여 중률(重律)로 다스린다. 정사(正使)에 소속된 자가 죄를 범하면 정사를 죄주고, 부사(副使)에 소속된 자가 죄를 범하면 부사를 죄준다. 그리고 서장관은 겸대(兼臺)로 일행을 검찰(檢察)한다. 그런데 정사나 부사를 막론하고, 그 소속된 자가 죄를 지었는데도 흐리멍덩하여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드러나면 마참가지로 논책(論責)한다. 서장관에 소속된 자가 죄를 범했을 때는 형벌의 등급을 더 올려 처벌한다. 만약 사행과 관련되어 바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은 세 사신이 상의하여 잘 처리하고, 귀국한 후에 그 사정을 조목조목 아뢴다.

10. 좌도(左道), 불경(不經), 이단(異端), 요탄(妖誕)한 말이 들어 있는 모든 서적 및 잡술(雜術)과 방서(方書)는 모두 엄격

하게 막는다. 역관 및 세 사신의 소속을 막론하고, 만약 몰래 사 오는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적발하여 불에 태우고 장계를 올려 보고한다. 범한 자는 극형(極刑)에 처하고, 사신은 엄히 다스리며, 서장관은 바로 그 지역 의주부(義州府)에 정배(定配)한다.[위의 두 조목은 병오년(1786) 정식(定式)과 정미년(1787) 정식에 실려 있다.]

11. 서장관은 분사헌부(分司憲府)라고 부른다.[원래의 사목에 실려 있다.]

12. 사행이 돌아올 때 의주부(義州府)에서 수검(搜檢)하는 법이 요즈음 점점 해이해지니, 일이 한심하기가 이보다 심할 수 없다. 만약 위 항목의 금지하는 물건을 몰래 사서 가지고 나왔다가 후에 드러나게 되면, 다시 옛 법을 밝혀 의주부윤(義州府尹)의 죄를 무겁게 다스린다.

13.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

건륭 52년 10월 일

3. 『금문사목』 간행 경위

무늬 있는 비단의 사용을 금지하는 『금문사목』은 정조 11년(1787)에 간행되었지만, 정조의 이 명령은 영조 22년(1746)의 문단(紋緞)을 금지하는 명령을 다시 강조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금문사목』이 나오게 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영조의 문단 금지령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 영조의 「병인수교」 배경

조선의 국왕들은 대체로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겨서, 사치를 막는 데 힘을 썼다. 영조도 검약을 강조하고 물자를 아껴야 한다는 것을 자주 얘기했는데, 특히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쓸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한 바가 있다. 이런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를 하나 보기로 한다. 영조 9년 말을 관리하는 태복시(太僕寺)에서 임금에 탈만한 말은 두

필밖에 없으니, 중국에서 호마(胡馬)를 사 와야겠다고 청했다. 그러자 영조는,

말에 관한 일은 옛날에도 중요하게 여겼으니, 우리나라에 어찌 말이 없겠는가? 제주(濟州)에서 나는 준마(駿馬) 가운데는 호마보다 좋은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을 버려두고 멀리 다른 나라에서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는 국내산 비단을 버리고 중국의 비단을 수입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이다.⁶

라고 했다. 이 기사를 통해, 영조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을 좋아하는 풍조를 비판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기 10여 년 전의 일이다.

『금문사목』의 「영조수교」 내용은, “국가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물화는 정해져 있는데, 나라에서 돈을 쓸 곳이 많다(土地之生財有限 軍國之需用甚繁)”는 말로 시작한다. 이 말은 한정된 재화를 아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대학』의 “재물을 만드는 데는 큰 방법이 있으니, 생산하는 자가 많고 쓰는 사람이 적고, 생산하는 것을 빠르게 하고 쓰는 것을 천천히 하면, 재물은 항상 충분할 것이다.(生財有大道, 生之者衆 食之者寡, 爲之者疾 用之者舒, 則財恒足矣.)”라는 사고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국부(國富)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통적인 사고를 이수교(受敎)는 잘 보여준다. 이처럼 먼저 절약의 당위성을 얘기한 다음, 영조는 이런 원칙에 맞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제시하는데, 사신이 한 번 중국에 갈 때마다 광은(礦銀)을 10만이나 써서 중국의 비단을 사 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광은은 조선에서 생산한 은인데,⁷ 매번 사행에서 은 10

6 『영조실록』 9년 3월 17일 기사.

7 정조가 세손(世孫) 시절인 영조 51년(1775) 홍대용과 세손 사이의 문답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세손이 “지금 광은(礦銀)이니 내은(萊銀)이니 하는 것은 무엇을 이릅시오?”(今云鑛銀萊銀何謂)라고 묻자, 홍대용은, “광은은 천은(天銀)인데 우리나라 은 광산에서 제련한 것이고, 내은은 왜은(倭銀)으로 동래(東萊)를 통해서 들어온 것인데 정은(錠銀)이라고 하

만 냥을 중국에 가지고 가서 비단을 사 온다는 것이었다.

영조가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한 날짜는 영조 22년(1746) 4월 16일이다. 이 날짜의 실록을 보면, 영조는 기이하고 교묘한 무늬가 있는 비단의 사용은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들은 신하들은, 임금과 왕후의 예복이나 벼슬아치들의 제복 그리고 군대에서 쓰는 것 발 등에는 무늬 있는 비단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영조는 특이한 빛깔이나 기묘한 무늬의 비단을 정해서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6일에 중국에 가는 사신 일행을 접견하면서 다시 강력하게 무늬 있는 비단의 반입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영조 24년에는 무늬 있는 비단만이 아니라, 무늬가 없는 비단도 수입하지 말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영조 26년에는 무늬 없는 비단의 수입이 1백 필을 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 다시 내렸다. 영조 32년(1756)에는 가채(加絨)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이전에 중국에서 무늬 있는 비단을 사 오지 못하게 하고 일본에서는 구슬을 구입하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치의 풍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무늬 있는 비단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영조가 내세운 가장 큰 명목은 사치를 막는다는 것이었으나, 실록을 편찬한 사관은 영조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그러나 세간의 풍속이 이미 고질이 되어서 하나도 그 효과가 없었고, 헛되이 법령만 어지럽게 고친 것이다(然俗習已痼 一無其效而法令徒歸於紛更矣)”라고 했다.⁸ 영조의 문단(紋緞) 금지는, 사치를 금지한다는 커다란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효용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명령이 일관되지 못해서 문단을 금지하는 명령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영조의 정책은 성공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다.

영조 22년에 문단(紋緞)의 사용을 금지한 명령을 내린

는 것입니다(鑄銀者天銀也 我國銀店所煉也 萊銀者倭銀之來自東萊者 所謂錠銀也)”라고 답변했다. 홍대용, 『담헌서(湛軒書)』, 『계방일기(桂坊日記)』

8 『영조실록』 39년 11월 9일.

주된 배경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조선이 일본과 중국 사이의 중개무역을 통해 벌어들이던 은(銀)의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영조의 수교(受敎)에서 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치를 막는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은(銀)의 수입이 거의 없는데, 비단 수입을 위해 중국으로 유출되는 은이 너무 많은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 핵심요인이라는 것이다.⁹ 이 문제는 17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 일본, 중국 사이의 은(銀)을 중심으로 한 무역구도와 관련이 있다. 이 시기의 삼국의 무역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조선을 중심에 놓고 이 무역구도를 요약한다면, 조선의 상인이 인삼을 일본에 수출하여 그 대금을 은(銀)으로 받고, 이 은으로 중국에서 생사(生絲)를 수입해서 일본에 되파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무역이 가능했던 것은, 일본과 중국의 직접 교역이 막히면서 조선이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중개했기 때문이다.¹⁰

다시로 카즈이(田代和生)는 조선,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무역로를 ‘은(銀)의 길’과 ‘비단의 길’이라고 불렀다. ‘은의 길’은 일본의 교토(京都)에서 출발한 은이, 쓰시마(對馬島)를 거쳐 조선의 동래 왜관에서 조선 상인에게 전달되고, 이 은이 서울을 거쳐 북경(北京)으로 조선의 연행사절단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을 말한 것이다. ‘비단의 길’은, 조선을 거쳐 북경에 온 은으로 구입한 중국의 고급 생사(生絲)가 다시 온 길을 되돌아가 동래에서 일본 상인에게 전달되고, 이 생사는 교토의 비단 직조 상인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한다.¹¹ 영조가 문단(紋緞)을 금지한 시기는, 1730년대 일본이 중국과 직접 무역을 시작한 직후이다.

9 김연신, 「18세기 조선사회 외래 사치품 紋緞의 소비 확대와 금지정책」,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37~40쪽; 이현창, 「조선시대 銀 유통과 소비문화」, 『명청사연구』 36, 명청사학회, 2011, 115~116쪽.

10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東京: 創文社, 1981; 한명기, 「17세기초 銀의 유통과 그 영향」, 『규장각』 1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2; 임반석, 「17~18세기 동북아시아 국제교역과 조선상인의 역할: 조선 사상의 중·외 중개무역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9-3, 한국동북아학회, 2004; 권내현,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조선의 은 유통」, 『역사학보』 221, 역사학회, 2014.

11 田代和生, 『倭館と朝鮮通信使』, 『조선통신사연구』 3, 조선통신사학회, 2006, 7~10쪽.

이때는 그동안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이 끊어졌으므로, 조선으로 들어오는 일본 은이 아주 줄어든 시기였다.

3.2. 정조의 『금문사목』 간행 과정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는 짧은 기간 대리청정을 한 후 왕위에 올랐다. 영조의 손자로 왕위에 오른 정조는, 할아버지가 성공하지 못한 무늬 있는 비단의 금지를 다시 시도했다. 정조는 즉위한 이래 사치를 통제할 방도를 찾았는데, 영조 때 시도했던 두 가지를 다시 추진했다. 하나는 가체(加髹)를 금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단(紋緞)의 금지이다. 정조의 무늬 있는 비단의 금지는 11년(1787)의 『금문사목』으로, 가체 금지는 다음 해의 『가체신금사목(加髹申禁事目)』으로 구체화되었고, 정조는 이를 강력하게 시행했다. 정조가 『금문사목』을 간행해서 배포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¹²

무늬 있는 비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영조의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이 정책을 다시 시행한 것이다. 대리청정 서너 달 후에 영조가 승하하자 정조는 왕위에 오르는데, 영조의 장사를 치를 때에 영조의 수의(壽衣)에 꽃무늬 비단은 쓰지 말라고 했다. 정조는 자신이 “정신이 없어서 점검하기 어렵다(荒迷有難照檢)”고 하면서도, “구름무늬 비단은 곤룡포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금지물이 아니니 마땅히 쓰지만, 그 밖의 꽃무늬 비단은 모두 사용하지 말라(雲紋緞 則常時袞袍所用 非禁物當用之, 其他花緞并勿用)”는 명령을 내렸다. 이를 통해 정조가 영조의 비단 관련 정책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영조의 의도를 존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의 임금으로 사치를 경계하지 않는 왕은 없지

만, 영조와 정조는 특히 검소함을 강조했다. 정조는 영조의 문단 금지령도 사치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치의 풍조는 더욱 심해진다고 걱정했다.¹³ 정조는 고급 비단의 국산화도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 10년 1월 22일 『일성록』에 상의원(尙衣院) 주부(主簿) 강진삼(康晉三)이 자신의 의견을 임금에게 아뢰는 내용이 나온다. 강진삼은 자신이 임금이 입는 옷의 옷감을 짜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상의원에서 짜는 비단에 들어가는 실은 중국에서 수입한 생사(生絲)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이 생사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누에를 키울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같은 날의 기사에, 좌부승지 이동형(李東馨)이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중국 비단의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 그는 조선에서 만든 비단도 곱고 화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중국의 비단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물가가 오르고 은이 부족해지는 원인이 사치품 수입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정조는 이 건의를 듣고, 비변사에 명하여 구체적으로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비변사에서,

무늬가 있든 없든 간에 비단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으나, 무늬 있는 비단을 몰래 사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의 금지령을 다시 써야 합니다. 중국에서 짐을 가져올 때, 별도로 수색하고 검사해서 법에 따라 처단하여 사치를 없애고 비용을 줄이라는 뜻을 의주부윤과 서장관에게 엄히 신칙하십시오.

라고 하자, 정조는 이대로 시행하라고 했다. 그리고 정조 10년 5월 15일 세자의 장례 때는 중국 비단을 쓰지 말고 국산을 사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금문사목』의 간행은 정조 11년 9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정조는,

¹² 정조는 중국에서 무늬 있는 비단을 사 오는 것에 대해, “나도 잠저(潛邸) 때부터 그것이 고질적인 병폐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재정을 축내는 일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¹³ 『일성록』 정조 2년 윤6월 6일 기사.

근래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법이 아주 없어져서, 법을 어기고 수입하는 무늬 있는 비단이 있어도 다시는 막는 일이 없다. 또 대궐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면 바깥의 일을 알 만하다. 영조께서 법을 만들어 장복(章服)·용복(戎服)·기치(旗幟)에 쓰는 구름무늬 비단 이외의 모든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했다. 그때 중국 상인들도 '우리는 이익을 잃더라도 조선은 반드시 큰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근래 점차 무늬 있는 능라주단(綾羅紬緞)을 수입해서 입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니, 옛 법을 다시 밝혀 엄히 금지하라. (『정조실록』 11년 9월 29일)

고 밝혀,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조는 영조 때 내린 명령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단지 금지의 명령을 반복한 것은 아니다. 정조는 9월 29일 『금문사목』의 「당저수교」를 하교하면서, 영조의 「병인수교」에서 구체적인 금지항목을 찾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영조 때의 기록은 전교(傳敎)만 남아 있고, 구체적인 금지항목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정조는 과거의 문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금지항목을 작성해오도록 했다. 다음날인 9월 30일 『일성록』에 “문단(紋緞)을 신칙하여 금하는 데 대한 절목을 수정했으면 들이라”는 정조의 말과 신하들이 수정한 것을 바쳤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9월 30일에는 절목(節目)도 일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0월 2일에, 금지할 품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데 대해서 논의하는 내용이 『일성록』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각 항목의 수정은 계속했음을 알 수 있다. 10월 3일 정조는 수정한 절목의 초고를 신하들에게 보여주면서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고, 신하들이 약간의 의견을 내어 수정본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10월 8일에는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사행재거사목」을 간략하면서도 행하기 쉽게 작성하라고 하여, 10월 10일에는 비변사에서 「사행재거사목」도 만들어서 임금에게 바쳤다. 『금문사목』을 인쇄한 날짜는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0월 25일에는 이미 서울의 중요 기관에 인쇄해서 비치해두었다고 했다.

4. 문단(紋緞) 금지령 관련 옥사(獄事)

영조와 정조 대에 두 차례의 문단(紋緞)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금지령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필자가 확인한 사례는 영조 때 한 건과 정조 때 한 건으로, 두 건 모두 금지령이 내려진 직후에 적발된 것이다. 두 사건을 검토하여 실제로 이 금지령을 위반한 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1. 영조 22년 역관(譯官) 이명직(李命稷) 사건

무늬 있는 비단의 수입을 금지하는 영조의 명령은 22년(1746) 4월 16일에 처음 내려졌는데, 이 해 12월 15일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록에 나온다.

평안도사 임집을 파직하라고 명하고, 무늬 있는 비단의 금지령을 어긴 이명직을 형조로 하여금 엄밀히 조사하여 아뢰게 하였다. 이때 재자관(賚咨官) 이명직이 돌아오는 길에 몰래 비단을 사 가지고 왔다. 평안도사 임집이 수색하여 찾아내어 바로 그 비단을 태워버리고, 이명직은 순영의 감옥에 가둔 다음, 상황을 자세히 써서 조정에 아뢰었다. 임금은, 이명직이 새로 만든 금지령을 맨 처음에 범했으므로 그 죄는 사형이 마땅하지만, 아직 형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영조실록』 22년 4월 16일)

이명직은 역관(譯官)으로 이해 4월에 나온 무늬 있는 비단 금지령을 어겼다. 그런데 4월에 내린 명령에는 구체적인 형벌의 내용이 없었으므로, 영조는 신하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지 묻은 것이다.

영조의 하문에 대해 영돈녕(領敦寧) 조현명(趙顯命)은,

금지된 물품을 몰래 사올 경우 법에는 본래 효시(梟示)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형률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략- 지금 이명직을 죽이지 않는다면 진실로 법이 해이해져서 먼 곳 사람들의 웃음을 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영조실록』, 22년 12월 15일)

라고 했고, 좌의정 정석오(鄭錫伍)는,

임금의 옷에 쓰는 비단은 호조에서 담당 시전(市廛)에서 사온 것을 쓰는 것이 상례입니다. 일행을 조사해서, 과연 구름 무늬 비단 외에 금지한 물품이 있다면 시장 상인을 죄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영조실록』, 22년 12월 15일)

라고 했다. 그리고 병조 판서 원경하(元景夏)는,

인명은 지극히 중한 것이므로, 사형을 의논할 경우 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 형률을 왜곡해서 구차하게 증거를 삼아서도 안 됩니다. 애당초 정해진 형률이 없는데도 서둘러 죽인다면 이는 백성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가 범한 것이 관청의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형당할 죄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법조문을 분명히 세우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영조실록』, 22년 12월 15일)

라고 했다. 그 외의 다른 신하들도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자, 영조는 이명직을 잡아와서 엄밀히 조사하도록 명했다.

『영조실록』의 이 기사를 통해서 이명직이라는 역관이 금지된 비단을 수입하다 적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승정원일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사건의 전말과 조정에서 논의한 내용, 그리고 사건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12월 13일 기사에, 재자관(齎查官)의 수본(手本)을 가져오라는 영조의 지시가 있었다.

이 지시에 따라 동부승지 이하종(李夏宗)이 재자관의 수본을 가져와서 읽었다. 재자관은 역관 이명직이 사신의 행차를 따라 북경을 갈 때 지닌 벼슬의 명칭이다. 영조가 이명직이 북경에 간 것이 언제인가 묻자, 호조판서 김시형(金始炯)이 8월이라고 대답했다. 영조는, 문단 금지령을 내린 것이 4월이므로, 이명직은 이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영조는 금지령에 있는 대로 사형을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신하들에게 물었다.

영돈녕(領敦寧) 조현명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고, 공조참판 조영국(趙榮國)은, 죄를 범한 자는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인데, 애초에 정해진 법률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영조는, “새로 법령을 만들자 이를 범했으니 매우 좋지 않으므로, 효시(梟示)하는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직이 중국에 갈 때, 무늬 있는 비단을 몰래 가져오면 효시한다는 하교를 내리기 전인가?”라고 물었다. 조현명은, 몰래 물건을 사오는 것은 효시에 해당한다는 법률이 이미 있으므로, 효시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좌의정 정석오(鄭錫伍)는, 먼저 조사를 해보자고 하면서, 자신은 이명직을 용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영돈녕 조현명과 호조판서 김시형도 사형을 시키더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조판서 원경하(元景夏)는, 당초에 문단을 금지하면서 불에 태워버리라는 말만 있었지, 처벌하는 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영조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은 말이라고 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강조했다.

논의가 계속되자, 사직(司直) 구성임(具聖任)은 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고, 이조판서 정우량(鄭羽良)은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정우량은, “왕이 된 자가 법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죽을 만한 상황에서도 살릴 방도를 찾아야 하고,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뒤에 처

단한다면 죽은 자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형조판서 유엄(柳儼)과 예조참판 홍상한(洪象漢)은 마땅히 조사를 한 후에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이조참판 심성희(沈聖希)는 사형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부사직(副司直) 정익하(鄭益河)는 좌의정의 의견에 동조하여 서울로 잡아와서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고, 공조참판 조영국도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영조가 홍문관 교리(校理) 윤봉오(尹鳳伍)에게 의견을 묻자, 윤봉오는,

신은 삼사의 직임을 맡고 있으므로 법을 지키려는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 일은 애초에 곡절을 알지 못하여 연석에 오른 뒤에야 비로소 대략 들었습니다. 사형은 극률(極律)인데 어찌 갑자기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하께서 검약을 숭상하고 검약을 숭상하는 덕을 신은 실로 흠양하는 바이니, 처음과 끝까지 한결같아서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형정(刑政)의 중대한 일도 신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명확히 조사하여 엄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12월 13일)

라고 하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홍문관 수찬(修撰) 성천주(成天柱)는,

공무역(公貿易)과 사무역(私貿易)하는 것은 본디 똑같은 규례로 금지해야 하지만, 법을 세운 초기에 만약 용서한다면 법령이 반드시 해이해질 것입니다. 신은 반드시 분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변방에서 효시하여 천하의 정령(政令)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令)은 나라의 대금(大禁)인데 애초에 분명하게 일정한 형률이 없어 이렇게 분란을 초래하였으니, 이는 소홀함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12월 13일)

라고 하여, 법률이 미비하였음을 지적했다.

영조 23년 1월 12일 『승정원일기』에는, 이명직을 특별히 용서하여 사형시키지는 않고, 기한을 정하지 않고 섬에 정배하며, 사면령이 내려도 사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¹⁴

그런데 영조 29년과 33년의 『승정원일기』 기사에는, 이명직이 다시 역관으로 중국에 다녀온 기록이 있다. 그리고 영조 35년(1759)에는 “이명직(李命稷)은 현재 자헌(資憲) 역관으로 연경(燕京)에 갔는데, 유독 지사(知事)와 실직(實職)을 거치지 않았으니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자리가 나는 대로 의망하도록 해당 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김상로(金尙魯)가 물으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명직은 역관 집안의 인물로, 그의 아버지는 이표(李杓)이고 그의 삼촌은 이추(李樞)이다.¹⁵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해서 벌을 받았지만, 통역관으로서의 능력을 아껴서 다시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

4.2. 정조 12년 김종망덕(金衆望德)의 옥사

정조 12년(1788) 3월 16일 『일성록』에는, 의주의 창군(槍軍) 이수양(李首陽)과 전흥정(田興丁)이 서흥(瑞興)의 종윤득(允得)의 부탁으로 짐을 날랐는데, 그 짐에서 무늬 있는 비단 유잡문초(有雜紋綃) 7필(疋)과 유문개기주(有紋改機紬) 1필이 나왔다는 평안감사의 보고서가 들어 있다. 그리고 심부름을 시킨 윤득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이미 도망쳐서 아직 붙잡지 못했다고 했다.

『심리록』 제20권의 기유년 평안도 항목에는, 정조 12년(1788) 4월에 이루어진 ‘의주(義州) 김종망덕(金衆望德)의 옥사’가 들어 있는데, 김종망덕의 죄목은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것(衆望德犯紋緞禁)’이었다. 정조 11년 10월에 『금문사목』이 간행되어, 중국에 사신으로

14 이명직을 살려준 데는 홍봉한(洪鳳漢)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홍재전서』 「익정공주고법기류서(翼靖公奏藁法紀類叙)」의 ‘신금인(申禁引)’ 참조.

15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12월 16일 기사.

가는 행렬의 모든 사람은 『금문사목』의 규정을 지키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김중망덕은 이 해의 사행에서 금지된 물품인 무늬 있는 비단을 몰래 가지고 왔다. 『일성록』 정조 12년(1788) 5월 5일의 기사에, 평안감사의 장계가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방금 의주부윤 심환지(沈煥之)가 장계(狀啓)한 보고서에, 무늬 있는 비단의 금지를 범한 죄인 역노(驛奴) 윤득(允得) 등에게 문목(問目)을 내어 공초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금문사목(禁紋事目)이 매우 엄한데, 김중망덕은 의주부(府) 사람으로서 이렇게 법을 어겼으니 사정이 매우 악질적입니다. 윤득은 법을 어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몰래 국경을 넘어 갔으니 역시 매우 악질적입니다. 김중망덕과 윤득을 모두 엄히 가두고, 법률에 따라 형벌을 내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의주 사람 김중망덕이 몰래 무늬 있는 비단을 중국에서 가져오면서, 이를 마두(馬頭) 윤득에게 나르게 했고, 윤득은 의주의 창군(槍軍) 이수양과 전홍정에게 잠깐 옮겨달라고 했는데, 이수양과 전홍정이 옮기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앞서 도망친 윤득을 체포해서 가두었다고 했다. 그리고 압수한 비단은 모두 불태웠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이 장계에 의하면, 김중망덕이 주범이고, 윤득 및 이수양과 전홍정은 짐을 옮긴 역할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정조는 이 장계를 보고, 김중망덕이 자복한 것이 아니니 계속 조사하여 결론을 내라고 지시하고, 장계를 도로 내려 보냈다.

정조 13년 윤5월 11일의 『일성록』 기사에 의하면, 윤득의 처가 격쟁(擊錘)하여 억울함을 호소한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조는 윤득을 풀어주라고 하교했다. 그리고 이수양과 전홍정은 의주에서 조사를 마친 후 풀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주범인 김중망덕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모두 풀려났다.

김중망덕의 옥사는 간단히 끝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사건은 그 후 10년 이상 해결이 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중망덕이 자신이 사 온 비단이 무늬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샀다고 계속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압수한 비단은 이미 불태웠으므로, 증거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정조 13년 12월 10일의 『일성록』 기록에는, 김중망덕이 자백했다고 보고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정조의 판결을 바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런데 정조는 김중망덕의 자백이 모호하다고 말하며, 다시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조 14년 8월 12일 평안감사의 보고에 의하면,

김중망덕이 처음에는 무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말로 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사하라는 임금의 명령이 내리자, 이전에는 하지 않던 남색 비단을 사왔다는 말을 지어내어, 금지령을 어기지 않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비록 살아날 방법을 꾀하는 것이지만, 종잡을 수 없이 말을 바꾸는 것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일성록』, 정조 14년 8월 12일)

라고 했다. 그리고 증거물을 다 태워버렸으므로, 김중망덕의 자백을 받아내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조 18년에도 아직 종결되지 않아서, 김중망덕의 아내가 서울에 올라와 격쟁(擊錘)하여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일성록』 정조 18년 2월 10일 기사에 실려 있다. 그리고 정조 21년 5월 18일 『일성록』 기사에는, 정조가 이 사건을 계속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했고, 다음 해 22년 5월 22일 『일성록』 기사에도, 정조는, “처음에는 무늬가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도 한 비단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남색 대단이라고 하였다. 옥사가 10년이나 걸렸으나 끝날 기약이 없다. 그러나 금지하는 것을 너그럽게 할 수 없고, 법률을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없으니 계속 추문하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이처럼 정조 12년에 죄상이 드러난 이후 10년이 넘도

록 판결이 나지 않던 김중망덕 사건은, 정조 23년 8월 26일에 비로소 결말이 이어졌다. 영조는 전 의주부윤 이기양(李基讓)의 말을 듣고, 김중망덕을 엄히 곤장 30대를 친 뒤에 멀리 떨어진 섬으로 보내 힘든 일을 시키라고 하고, 그 처에게는 쌀과 숨을 넉넉히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이기양은, 김중망덕이 무늬 있는 비단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범했는데도 임금이 신중하게 처리하여 아직 살아 있다고 말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판결은 임금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중망덕의 처가 지난 12년 동안 옥에 갇힌 남편을 살리려고 애쓴 일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그 처가 낮에는 구걸하여 음식을 얻어 남편을 먹이고, 밤이면 감옥 밖에서 엎드려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처가, “천리 길을 기어 와서 세 차례나 격쟁(擊鐙)했으며, 자신이 대신해서 남편의 목숨을 살리겠다고 12년 동안 매일 애썼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기양은, 자신이 김중망덕의 아내 일을 말하는 것은, 사형수를 처벌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한 아낙이 애를 쓴 뛰어난 행실은 족히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었으며, 성군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의 풍습을 교화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조는 이기양의 말을 듣고, 옥사가 이루어진 지 12년이 지나서 김중망덕의 사건의 판결을 내렸다. 『금문사목』의 처벌 규정을 따르면 김중망덕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조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판결을 미루다가, 죄인의 아내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 애쓴 공을 참작해서 사형을 면하게 해주었다.

5. 19세기 통속예술 속의 비단

영조와 정조의 단호한 의지로 무늬 있는 비단의 금지령이 내려졌고, 실제로 이 법률을 어겨 처벌받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정조의 사후 19세기에 들어와서 『금문사목』은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순조 8년(1808) 호조판서 이만수는, 영조와 정조 때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한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왕에게 건의했다. 순조는 이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무늬 있는 비단을 사용하다 벌을 받았다는 기록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순조 34년(1834)에 좌의정 심상규는 다음과 같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사목(事目)이 매우 엄한데, 국경의 관문에서 조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조와 정조 때의 수교(受敎)를 법(法)으로 걸어놓았는데, 지금은 남김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만약 조금이나마 유행하는 폐단을 고치려고 한다면, 나라에서 금지하는 것을 다시 엄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순조실록』, 순조 34년 2월 10일)

그리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순조는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심상규의 말을 통해, 1834년 무렵에는 중국에서 귀국하는 사람들이 무늬 있는 비단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규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9세기 초엽부터는 문단(紋緞)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지켜지지 않았고, 나라에서도 특별히 이를 금지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은, 19세기 소설이나 노래 속에 무늬 있는 비단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초에 나온 『춘향전』이나 19세기 중반에 나온 『한양가』, 그리고 여러 가지 노래에 비단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보기로 한다.¹⁶

춘향전에는 여러 대목에서 비단이 나오는데, 춘향과 이도령의 의복을 묘사할 때 많이 나타난다. 이도령이 입은

¹⁶ <비단타령>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무가(巫歌), 판소리, 휘모리잡가 등에 <비단타령>이 들어 있다고 한다. 최지연, 「비단타령의 유형과 전승에 관한 고찰」, 『한국음악연구』 68, 한국국악학회, 2020.

의복에 나타나는 비단은, 수갑사(繡甲紗) 토막댕기, 생면주(生綿紬) 겹바지, 옥색 항라(亢羅) 겹저고리, 당갑사(唐甲絲) 수향배자(褙子), 생초(生綃) 긴 옷, 한포단(寒布緞) 허리띠, 모초단(毛綃緞) 두리쭈치, 자지갑사(紫地甲紗) 넓은 띠 등이 다. 그리고 춘향의 의복을 묘사한 대목에는, 초록갑사(草綠甲紗) 결마기, 백문항라(白紋亢羅) 고장바지, 분홍갑사(粉紅甲紗) 너른바지, 측라요대(蜀羅腰帶), 용문갑사(龍紋甲紗) 도홍(桃紅)치마 등이 나타난다.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이 여러 가지 있고, 용무늬 등의 무늬 있는 비단도 나온다.¹⁷

〈한양가〉에서 서울의 시장을 묘사해놓은 대목은 육의전(六矣廛)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육의전에서 비단을 파는 가게는 선전(緙廛)과 면주전(綿紬廛) 두 군데가 있는데, 선전은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을 파는 가게이고, 면주전은 조선에서 생산한 비단을 파는 가게이다. 〈한양가〉에는 면주전은 소개하지 않고 선전만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수입한 비단을 나열했다.

한양가에서 비단을 나열하는 방식은 단순히 비단 이름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단 이름 앞에 이 비단을 수식하는 한시 구절이나 노래 가사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춘풍도리화개야하니 변화로운 도류불수
매화만국청모적하니 매죽문 가게주며
용귀효동운유습하니 혼란할사 용문갑사¹⁸

라는 식으로 비단을 소개했다. 첫 번째 도류불수(桃榴佛手)는 복숭아·석류(石榴)·불수감(佛手柑) 무늬의 비단으로, 백거이(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의 한 구절인 춘풍도리화개야(春風桃李花開夜, 봄바람에 복사꽃과 오얏꽃 피는 밤)라는 시로 비단을 수식했다. 두 번째는 조선의 시인인 신광수

(申光洙)의 〈등악양루탄관산용마(登岳陽樓歎關山戎馬)〉의 한 구절인 매화만국청모적(梅花萬國聽暮笛, 온 세상에 매화가 피었는데 저물녘 피리소리 들리네)으로 가게주를 표현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당나라 허혼(許渾)의 〈제최처사산거(題崔處士山居)〉의 한 구절인 용귀효동운유습(龍歸曉洞雲猶濕, 새벽이라 용은 골짜기로 돌아갔으나 구름은 오히려 젖어있네)을 이용해서 용무늬 갑사를 꾸몄다. 이런 방식으로 나열한 선전의 비단은 다음과 같다.

공단(貢緞), 대단(大緞), 사단(絲緞), 궁초(宮綃), 생초(生綃), 설한초(雪寒綃), 일광단(日光緞), 월광단(月光緞), 운문대단(雲紋大緞), 도류불수(桃榴佛手), 매죽문(梅竹紋) 가게주(紬), 용문(龍紋) 갑사(甲紗), 상사단(相思緞), 통해주(通海紬), 장원주(壯元紬), 포도(葡萄) 대단(大緞), 조개 비단, 금선단(金線緞), 양화단(洋花緞), 설사(雪紗), 빙사(氷紗), 호로단(皓老緞), 만수단(萬壽緞), 우단(羽緞), 아롱단(緞), 팔량주(八兩紬), 쌍문초(雙紋綃), 흑저사(黑紵紗), 남추라(藍秋羅), 자지(紫地) 상직(常織), 검은 궁초(宮綃).

『금문사목』은 모든 무늬 있는 비단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궁중이나 관리의 예복 그리고 군대의 깃발 등에 쓰는 것은 허용했으므로, 서울의 비단가게에서 중국산 무늬 있는 비단을 판매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양가〉에서 나열한 수입품 비단은 일반인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비단 중에는 무늬 있는 것을 보면, 해, 달, 구름, 복숭아, 석류, 불수감, 매화, 대나무, 용, 포도, 조개, 아롱무늬 등이 있다. 19세기 중엽에는 이와 같은 무늬 있는 비단의 사용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세기에 나온 노래 가운데 ‘비단타령’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서울의 휘모리잡가나 판소리 〈홍보가〉 중에도 들어 있고, 각 지방의 민요나 무가(巫歌)에도 비단을 나열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 〈홍보가〉나 무가에 나오는 비

17 이윤석, 『남원고사 원전비평』, 보고사, 2009.

18 이윤석, 김유경, 『남훈태평가, 한양가』,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147쪽.

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광단, 월광단, 천도문, 지도문, 대단, 와룡단, 영초단, 대원단, 완자문, 포도문, 화초단, 넉출문, 대접문, 한포단, 가계주, 도류불수, 상사단, 공단, 호피단, 양태문, 은조사, 복수단, 궁초단, 객초단, 송죽단, 노방주, 청사, 홍사, 통견, 백납릉, 흑납릉, 월하사주, 당포, 읍포, 세포, 수주, 통호주, 황저포, 갑사.

판소리 <흥보가>에서 비단이 나오는 대목을 보면, 대단(大緞), 공단(貢緞), 은조사(銀條紗) 같은 비단의 직조 방식에 의한 명칭과 함께 완자문, 포도문, 넉출문, 대접문 같은 무늬의 명칭이 섞여 있다.¹⁹

이상에서 19세기 통속문예물에 나타나는 비단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정조의 『금문사목』에서 금지한 많은 종류의 무늬 있는 비단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수입 비단을 일반 서민이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노래에 이런 비단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비단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9세기 중반 이후의 관찬 사료에서도 비단을 규제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정조 이후에는 『금문사목』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6. 결론

정조 11년(1787) 간행된 『금문사목』은, 사치를 금지하기 위해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임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만으

로는 충분치 않다. 문단(紋緞)을 금지하는 법령은 영조 22년(1746)에 이미 나온 것인데, 이 법령은 실효를 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조의 문단 금지령의 배경으로 들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까지 활황을 누렸던 조선의 중개무역이다. 중국의 생사(生絲)를 구입해서 일본에 파는 중개무역을 통해 이 시기 조선은 상당한 양의 은(銀)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1730년대 중국과 일본의 직교역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조선은 더 이상 중개무역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조선은 은의 재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매년 많은 양의 중국비단을 수입하게 되자, 점점 더 재정의 핍박을 받게 되고, 이것이 영조 때 문단 금지령의 중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조의 문단 금지령의 배경이 이와 같은 조선의 은(銀)의 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영조시대 비단 수입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조의 『금문사목』 간행은 영조의 정책을 그대로 이은 것인데, 정조는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은 정책을 펴게 된 것일까? 사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표면에 드러나는 언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도 『금문사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금문사목』은 학계에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의 의의 몇 가지를 보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첫째, 『금문사목』의 정확한 번역이다. 이제까지 『금문사목』의 번역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정확한 번역이 나온 것은 없었다. 영조와 정조 시대의 여러 문헌에 『금문사목』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들어 있어서, 이를 참고하면 영조와 정조의 수교 그리고 ‘사행재거사목’의 내용은 번역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정조가 구체적으로 정한 금지규정은 번역된 것은 없고, 또 기존의 번역 가운데는 잘못된 곳이 있다. 이 글의 제2장에서 제시한 『금문사목』의 번역은,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다.

¹⁹ 19세기에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의 목록을 적어놓은 ‘발기[件記]’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수입 비단의 문양 27종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양가』나 <비단타령>에는 수입 비단 목록에 없는 여러 가지 문양이 더 있는 셈이다. 이다란·김여경, 「19세기 무역 발기[件記]를 통해 본 왕실용 문직물 수입과 문양 선호 경향」, 『服飾』 73-5, 한국복식학회, 2023, 56쪽

둘째, 『금문사목』을 하나의 연구주제로 다룰 필요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RISS에서 ‘금문사목’을 검색해보면, 석사학위논문 한 편이 나올 뿐이다. 이 논문도 『금문사목』이 주제가 아니라, 사치 문제를 다룬 논문이다. 영조와 정조 시대에 일반 국민들은 무늬 있는 비단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학계에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금문사목’은 조선후기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셋째, 『금문사목』은 영조의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하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고, 정조는 이 정책이 이후에도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가면, 문단(紋緞)을 금지하는 규정은 죽은 법률이 된다. 비단과 관련된 노래나 소설 속에 나오는 비단 관련 내용을 보면, 18세기에 무늬 있는 비단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문사목』은, 자연스럽게 조선에서는 왜 무늬 있는 비단을 생산하지 않았는가? 또는 못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그리고 조선의 국왕과 신하들은 외국과의 무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하는 문제도 떠올리게 된다. 앞으로 『금문사목』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금문사목(禁紋事目)』, 178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2. 단행본 및 논문

- 권내현,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조선의 은유통」, 역사학보 221, 역사학회, 2014.
- 김동철, 「조선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동래상인」, 『민족문화』 21, 민족문화추진회, 1998.
- 김연신, 「18세기 조선사회 외래사치품 紋緞의 소비 확대와 금지정책」,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 김영록, 「17~18세기 대청 사행의 중개무역과 價償廳」, 『한국민족문화』 63,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 이다란·김여경, 「19세기 무역발기[件記]를 통해 본 왕실용 문직물 수입과 문양선호 경향」, 『服飾』 73-5, 한국복식학회, 2023.
- 이수현, 「조선시대 문직물의 수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6.
- 이윤석, 『남원고사 원전비평』, 보고서, 2009.
- _____, 김유경, 『남훈태평가, 한양가』,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 이은진, 「19~20세기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4.
- 이철성, 「조선후기 연행무역과 수출입 품목」,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학회, 2010.
- 이현창, 「조선시대 銀유통과 소비문화」, 『명청사연구』 36, 명청사학회, 2011.
- 임반석, 「17~18세기 동북아시아 국제교역과 조선상인의 역할: 조선 사상의 중·왜 중개무역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9-3, 한국동북아학회, 2004.
- 정성일, 「19세기 중엽 조선 역관의 무역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60, 한일관계사학회, 2018.
- 최지연, 「비단타령의 유형과 전승에 관한 고찰」, 『한국음악연구』 68, 한국국악학회, 2020.
- 한명기, 「17세기초 銀의 유통과 그 영향」, 『규장각』 1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2.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東京: 創文社, 1981.
- _____, 『倭館と朝鮮通信使』, 『조선통신사연구』 3, 조선통신사학회, 2006.

Abstract

Research on *Geummun-Samok*(禁紋事目, a regulations banning the import of patterned silk) in 1787

Lee, Yoon-Suk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three significances.

First, i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Geummun-Samok*. Several documents from the reigns of King Yeongjo and Jeongjo partially contain the contents of *Geummun-Samok*, and by referring to them, you can find the translated portions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Yeongjo and Jeongjo. However, the prohibition regulations specifically set by King Jeongjo have not been translated, and there are mistakes in the existing translations. The contents translated in Chapter 2 of this article can be used in the study of *Geummun-Samok*.

Second, it is necessary to treat *Geummun-Samok* as a research topic. When you search for *Geummun-Samok* on RISS, there is only one master's thesis. Since this thesis also deals briefly with the *Geummun-Samok*, it does not deal with the *Geummun-Samok* as its subject.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that the general public could not use patterned silk (Mundan) during the reigns of King Yeongjo and Jeongjo. It is strange that academia has no interest in this issue. *Geummun-Samok* can be a keyword to understand the late Joseon Dynasty.

Third, *Geummun-Samok* came about as an extension of King Yeongjo's policy of banning patterned silk, and King Jeongjo hoped that this policy would continue in the future. However, in the 19th century, the regulations prohibiting patterned silk became nominal. If we look at silk-related content in songs or novels, we can see that the 18th century rule banning patterned silk is no longer in effect.

Keywords *Geummun-Samok*(禁紋事目, a regulations banning the import of patterned silk), Patterned silk, Import of silk, Song of silk, King Yeongjo, King Jeongjo